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내년부터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새롭게 지원될 다자녀가정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의 지원기준, 범위, 신청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용어정의

-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 5세 미만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아동에 지원하는 지원금
-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나. 지원기준**

- 1) 지원대상 : 만 5세 미만의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아동, 단 아동수당 수급권자
- 2) 지원액 :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
- 3) 지원기간 : 아동이 만 5세가 되기 전달까지

#### **다. 지원범위**

- 1)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아동
- 2) 12개월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소급 지원

#### **라. 신청절차**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동장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 4호)

#### **마. 환수조치**

- 지원 부적합 시, 즉시 환수 조치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 보육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여성보육과, 전화 : 02-3396-5433, 팩스 : 02-3396-8739, email : lmy\_2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⑥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이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 5세 미만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아동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⑦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의3(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①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5세 미만의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아동이다. 이 때,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이어야 한다.

- ② 지원액은 매월 1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③ 지원기간은 신청한 날의 그 다음 달부터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아동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12개월 미만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한 날이 해당되는 달의 그 다음 달에 소급 지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출산양육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아동의 “보호자” 가 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양육지원금 및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및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및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대상자는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제4항 중 “문자메세지”를 “문자메시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동장은 매월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및 구성원 변동 등 대상자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자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지급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서울시 중구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자택		H. P.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출생순위	자녀 중 째 (남/여)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와의 관계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2조(용어의 정의)</p> <p>⑥ “<u>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u>” 이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 5세 미만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아동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p> <p>⑦ “<u>보호자</u>”란 아동의 친권자 ·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u>&lt;신 설&gt;</u>	<p>제3조의3(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p> <p>① <u>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5세 미만의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아동이다. 이 때,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이어야 한다.</u></p> <p>② <u>지원액은 매월 1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u></p> <p>③ <u>지원기간은 신청한 날의 그 다음 달부터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4조의2(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범위)</p> <p>① <u>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아동으로 한다.</u></p> <p>② <u>지원대상자가 12개월 미만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실제거주 기간 이 12개월 이상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한 날에 해당되는 달의 그 다음 달에 소급 지원한다.</u></p>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	<p>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p> <p>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의 <u>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u></p>
제6조(지원신청)	<p>제6조(지원신청)</p> <p>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p>
	<p>① 출산양육지원금 및 <u>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및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및 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대상자는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u>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u>(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u>제4조의2제2항</u>에 따른 대상자는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p><b>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b>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b>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b></p> <p>① 동장은 매월 다자녀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및 구성원 변동 등 대상자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자급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p>